

1. 개정이유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어업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의무신고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무신고어업 현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신고어업 현황 보고 사항 정비(안 제9조의2 제3호 삭제)

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마련(안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8.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제명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절차)”를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명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규모(깊이, 넓이, 유량 등)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제2항(종전의 제명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 ----- ----- ----- ----- ----- ----- ----- ----- ----- -----.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1. ~ 2. (현행과 같음)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u>별지 제6호의4서식</u>	3. <u><삭 제></u>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u>절차</u>) <u><신 설></u>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u>기준 및 절차</u>)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u>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규모(깊이, 넓이, 유량 등)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	--------------------------------